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8월 13일,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8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9.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9.15.)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현행법 제13조는 ‘비전염성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잠복결핵감염자’는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않고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비해 증상이 없으며 위험도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취업 거부 금지 대상에 ‘잠복결핵감염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양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비전염성결핵환자”를 “비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로, “결핵환자라는”을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 ③ (생 략) 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u>비전</u> <u>염성결핵환자</u> 에 대하여 <u>결핵환</u> <u>자</u> 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 부할 수 없다. ⑤ (생 략)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비전</u> <u>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u> <u>자</u> ----- <u>결핵환자 또는 잠복</u> <u>결핵감염자</u> 라는----- ----- ⑤ (현행과 같음)